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509호
----------	-------

2016. 12. 14.(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6년 11월 22일
- 회부일자 : 2016년 11월 23일

다. 상정일자 : 2016년 12월 05일

-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함.

나. 주요내용

- 조정교부금의 산정·배분방법 변경(제6조)
 - 시·군의 도세징수 실적에 따른 배분을 100분의 30 → 100분의
 - 재정적지수 기준 배분을 100분의 20 → 100분의 30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

- 시·군 조정교부금은 시·도 관할 시·군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를 경우,
 -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 전체의 도세 징수실적 대비 해당 시·군의 도세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토록 하여,
 - 오히려 재정여건이 양호한 시·군에 일반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문제가 발생해옴.
 - 이에, 일반조정교부금 배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보다 많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이 개정(2016. 8. 29.)되었고, 2017. 1. 1.부터 시행될 것임.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개정 내용

기 존	개 정 (시행 2017. 1. 1)
③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에는 ~ 100분의 30 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광역시세·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③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에는 ~ 100분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광역시세·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30 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 개정 내용은, 안 제6조 제1항에서

- 도세징수실적 비율에 따른 시·군 배분율을 기존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변경하고,
- 재정력지수에 따른 배분율을 기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변경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2016년 시·군 조정교부금 내용

(단위: 억원)

구 분	2016년 지방세 총재원			2016년 조정교부금 재원		일반조정교부금 (C×90%)	특별조정교부금 (C×10%)
	소계 (A)	도세	지방소비세	배율 (B)	산출액 (C=A×B)		
계	6,915	4,730	2,185		2,610	2,349	261
청 주 시	3,727	2,550	1,177	47%	1,751	1,576	인구수 50% 도세 징수실적 30% 재정력지수 20%
충 주 시	975	667	308	27%	263	237	
제 천 시	484	331	153	27%	130	117	
보 은 군	118	80	37	27%	31	29	
옥 천 군	207	142	66	27%	56	50	
영 동 군	152	104	48	27%	41	37	
중 평 군	104	71	33	27%	28	25	
진 천 군	366	251	116	27%	99	89	
괴 산 군	173	118	55	27%	47	42	
음 성 군	491	336	155	27%	132	119	
단 양 군	118	80	37	27%	32	28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조정교부금의 산정·배분방법)</p> <p>① <u>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방법은 일반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근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도 전체의 인구수에서 해당 시·군의 인구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 전체의 도세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에서 해당 시·군의 도세 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 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u></p>	<p>제6조(조정교부금의 산정·배분방법)</p> <p>① ----- ----- ----- ----- ----- <u>100분의 20에</u>----- ----- ----- -----<u>100분의</u> <u>30에</u>----- ----- ----- ----- ----- ----- -----.</p>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

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시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①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정교부금: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광역시세·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④ 삭제

⑤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